5.29(수)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보 도 자 료

'02.5.27

◇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5월28일(수) **'02년도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**를 개최,

○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, 경제4단체장등 자문위원 19인과 복지부·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**KDI가 마련한 「고령화의 경제적영향과 대책」**을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음

- 동 회의 논의결과는 향후 정부의 중장기 관련 정책 수립시 반영할 예정임

※ 참 석 : 자문위원 19인, 관계장관 2인

- 민간위원 (17인)
  김재철(무역협회장), 김각중(전경련회장), 박용성(대한상의 회장), 김영수(중기협회장), 강봉균(KDI원장), 정창영(한국경제학회장), 이영숙(여성경제인 협회장), 김애실(여성경제학회장), 좌승희(한국경제연구원장), 안문석(전자정부특위원장), 복성해(생명공학연구원장), 정대근(농협중앙회장), 강정일(농촌경제연구원장), 김금수(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), 김한중(한국보건행정학회장), 장하진(여성개발원장), 장명수(우석대 총장)
- 정부측 위원 : 경제부총리, 경제수석
- 관계부처 장관 : 보건복지부·노동부장관

報道資料 生産處: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(723-2145~7)
이명규 국장, 김낙회 과장

< KDI 보고내용 >

## 1. 고령화 추이

□ **'00년 현재 7.2%**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**'19년에는 14%**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**고령화가 급속히 진전**

○ 고령화의 진전은 **출산율의 저하**('70년 가임여성 1인당 4.5명→ '00년 1.4명) 및 **평균수명의 연장**('70년 63.2세→ '00년 74.9세)에 기인

## 2.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

□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**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**할 가능성

□ 청장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노년기의 저축성향이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**민간저축율은 감소**할 것으로 예상

□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**채권투자비중이** 높아지고, **연금기금의 규모 증가**('01년 GDP대비 14% → '20년 44%)등으로 자본시장의 변화가 예상

□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조세수입·사회보장기여금 등 **재정수입은 감소**되는 반면, 연금수급자의 증가, 노인복지비 지출증가 등으로 **재정지출은 급증**할 것으로 전망

□ 건강·의료 복지서비스 부문의 확대 및 다양화, 노인관련 레저·주택산업의 다양화 등 **실버산업의 발달**이 예상

## 3. 고령화를 준비하는 대책

□ 고령화사회에서 **지속적인 성장을 유지**하기 위해 연금 등 **사회보장 제도의 전환, 고용구조의 개편, 자본시장의 안정화, 재정건전화 등**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의 추진이 필요

□ 사회보장제도의 개선

○ **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연장, 연금급여 및 보험료의 조정 등 연금제도의 개선**을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약화시킴

○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비용효과적인 在家진료서비스의 구축 등 **장기요양서비스비용 효율화와 함께** 장기요양보험도입·개인부담원칙의 강화등 **비용 분담 적정화**의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

□ 노동시장 대책으로는 연령기준의 강제퇴직 금지 등 **근로시기 연장 및 이에 상응하는 고용능력 제고와 고용기회를 창출**하는 노력이 필요

□ 자본시장 대책으로는 연금기금 등 장기저축 자금의 건전성 및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한 **적정한 노후 소득보장,** 연금기금투자의 원칙정립 등 **연금기금의 자본시장 연착륙 노력**이 필요

□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는 **재정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수지의 건전화와 국민부담의 경감노력**이 필요

□ 여성정책측면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제약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**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제고**할 필요

※ 별첨 : KDI 보고자료 (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)

<첨부> KDI 보고자료

#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

2002. 5

한 국 개 발 연 구 원

# ◁ 목 차 ▷


1. 고령화 전망 및 원인 ..... 1

2.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..... 2

1)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..... 2

2)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..... 3

3) 경제성장 및 기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..... 5

4) 재정에 미치는 영향 ..... 6

5)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..... 8

4.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대책 ..... 8

1)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..... 8

2) 노동시장 대책 ..... 10

3) 자본시장 대책 ..... 12

4) 재정개혁 ..... 13

5) 여성정책 ..... 13

6) 이민정책 ..... 14

# 1. 고령화 전망 및 원인

□ 2000년 현재 7.2%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9년에는 14%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불과 19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

* 고령화사회: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인구 비율이 7%, 고령사회: 14%

*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: 프랑스 115년, 스웨덴 85년, 미국 71년, 일본 24년

□ 고령화의 원인: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연장

○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참여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임연령 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이 4.5명('70년)에서 1.4명('98년)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는 OECD 국가중에서도 낮은 편

| | 한 국 | 독 일 | 일 본 | 스웨덴 | 캐나다 | 프랑스 | 미 국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· '70년 | 4.5(명) | 2.0 | 2.1 | 1.9 | 2.3 | 2.5 | 2.5 |
| · 최근년도 | 1.4 ('00) | 1.3 ('96) | 1.4 ('98) | 1.6 ('96) | 1.6 ('95) | 1.7 ('96) | 2.0 ('97) |

-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(2.1)에 크게 미달하며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출산율의 감소는 지속될 전망

*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추진된 대책(보조금 지급 등)들의 효과는 크지 않음

○ 의학기술의 발전,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63.2세('70년)에서 74.9세('00년)로 증가

□ 급속한 고령화의 함의

○ 고령화 대책은 주로 개인의 퇴직 의사결정 및 퇴직후의 소득 마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상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경우에는 충분한 대비가 어려움

## 2.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

### 1)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

□ 생산연령인구의 감소

○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고령화의 진전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율뿐 아니라 수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율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지 않는 한 취업자 수가 감소할 전망

<생산가능인구(15~64세) 전망>

(단위: 천명, %)

| | 2000 | 2005 | 2010 | 2015 | 2020 | 2025 | 2030 | 2035 | 2040 | 2045 | 2050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생산가능인구 | 33,702 | 34,577 | 35,741 | 36,324 | 35,948 | 34,391 | 32,475 | 30,362 | 28,149 | 26,342 | 24,417 |
| 생산가능인구비율 | 71.7 | 71.4 | 72.1 | 72.1 | 71.0 | 67.9 | 64.6 | 61.4 | 58.4 | 56.7 | 55.1 |
| 취업자 수 | 21,061 | 23,489 | 24,405 | 25,194 | 25,478 | 24,788 | 24,186 | 23,347 | 22,136 | 20,603 | 18,979 |

주: 취업자수는 현재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율이 그대로 유지되나, 여성의 경우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 후 산출

자료: 이혜훈,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, KDI, 2001

○ 취업자수의 감소는 이를 상쇄할만한 노동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

○ 선진국의 경험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함께 일인당 근로연수도 감소해 왔음

* 1960년에는 남성의 평균수명은 68세로 이중 50년은 근로, 18년은 영유아기 및 학교교육 이수 등의 비근로 활동에 활용하였으나, 1998년의 경우는 평균수명은 76세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연수는 38년으로 감소하고 교육, 실업, 퇴직 등의 비근로활동에 38년을 소요한 것으로 분석됨(OECD 1998)

□ 생산인구 자체도 고령화

○ 현재 우리 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구조는 OECD 국가 중 젊은 편에 속하나 2020년경에는 상당히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

- 2002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중 50～64세 인구의 비중이 18.4%, 25～49세 인구 비중은 58.8%로 비교적 젊은 노동력구조를 보이고 있으나, 2020년에는 50-64세 인구가 33%로 급증

- 경제활동참가자의 중위연령도 2001년 현재 40세에서 2030년경에는 47세로 증가

<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 (2001-2030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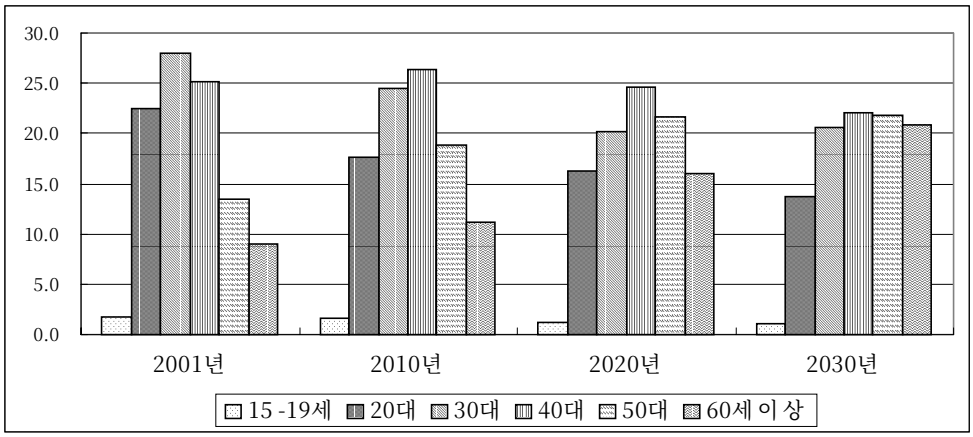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장지연, 고령화와 노동시장 정책, 미발표 원고

○ 통상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하락하므로 재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 강화되지 않고는 전반적인 생산성의 하락이 우려

## 2)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

□ 저축율의 감소로 인한 가용자금의 위축

○ 청장년기의 저축성향이 노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높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간저축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(life-cycle theory)

○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재정수지의 악화로 정부저축율도 감소하기 때문에 총저축율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가용자금의 감소, 투자의 위축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

* OECD 국가의 경우 time-series data 분석 및 cross-country 분석 모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간저축율 및 총저축율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줌

□ 자산보유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본시장 변화

○ 고령자일수록 위험기피도가 증가하고 무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전으로 주식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

□ 연금기금의 증가로 자본시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

○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금기금 운용액이 급증하고 자본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짐

* GDP 대비 적립금 비율: 14%(2001년) → 44%(2020년경)
*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자금: 채권 총 발행잔액의 20%,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15%

○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금기금의 속성상 저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위험자산과 저위험자산간의 균형이 깨어질 가능성이 높음

* 2001년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현황은 주식류 6%, 채권 및 정기예금 91%로 저위험자산의 비중이 극히 높은 실정

○ 연금기금에 의한 채권시장의 왜곡을 완화하고 연금수익성의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서는 주식투자 비중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○ 주식투자비중의 확대는 현재 진행중인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제에서 직접금융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큼

○ 연금기금의 비대화는 자본시장에서의 연금기금의 영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연금기금의 투자전략이 경제 기초여건(fundamental)과 괴리될 때 자본시장이 경직되고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음

□ 자산 수익률의 저하 가능성

○ 노동투입의 감소로 인해 자본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그 결과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

□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

○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금기금의 속성상 우량기업위주로 투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량기업에 있어서 연금기금이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게될 가능성이 높음

○ 연금기금의 수익성제고 차원에서 내부자거래 규제, 소액주주 보호 등 주주의 권익 및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각종 법·제도의 개혁이 촉진되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

○ 그러나, 국민연금기금의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,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의 능동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

* 현재 수립중에 있는 국민연금중장기투자정책안에 의해 기금운영관리체계의 독립성,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

### 3) 경제성장 및 기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

□ 경제성장의 둔화

○ 노동공급의 감소, 저축율의 감소로 인한 투자의 위축은 이를 상쇄할만한 획기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성장을 둔화시킴

* 대부분의 OECD국가의 경우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2000년부터 2050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이 1.6~1.8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(OECD 2001)

| | 한 국 | 일 본 | 독 일 | 프랑스 | 영 국 | 미 국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· GDP성장률 | 2.90 | 1.04 | 1.40 | 1.62 | 1.69 | 2.28 |
| · 노동생산성 | 2.73 | 1.66 | 1.72 | 1.72 | 1.82 | 1.83 |

□ 자본수지의 악화 가능성

○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자본의 수익률 하락을 극복하고 자산의 다각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으로 자본이 이동하여 자본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

* 자본수익율 제고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저축의 감소 및 수익률의 하락을 상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(OECD)

*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할 가능성

○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의 수익률 하락이 적어 선진국의 자본이 유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,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

### 4) 재정에 미치는 영향

□ 재정수지의 악화

○ **재정수입:** 취업자수의 감소, 연금가입자의 감소, 경제성장의 둔화 등은 조세수입, 세외수입,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

○ **재정지출:** 연금수급자의 증가, 노인진료비지출의 앙등, 노인복지비 지출 증가, 교육비 증가 등은 재정지출의 급증요인으로 작용

* **연금:** 고령화의 추세를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자의 증가 및 가입자 감소는 그림과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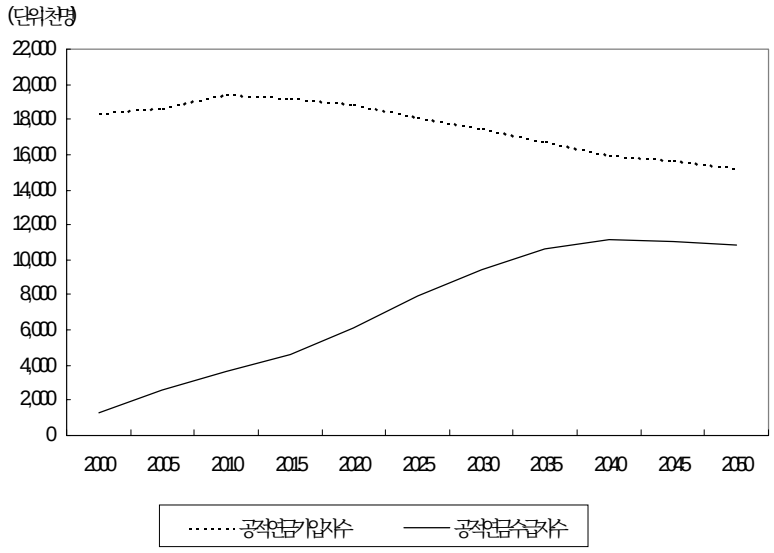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이혜훈,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, KDI, 2001

* **의료:** OECD자료('00년)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1인당 진료비는 비노인인구 일인당 진료비의 2.4배에 달함 (독일 2.7, 프랑스 3.0, 영국 3.7, 캐나다 4.7, 일본 4.8)

* **교육비:** OECD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교육비지출은 연금 및 의료와 함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증가하는 3대 지출 중의 하나인 바, 이는 고령 근로자의 재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
□ 국가부채의 누적

○ 고령화가 진전되어 온 OECD국가의 경우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국가부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(OECD 2001)

-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다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속화하여 '재정수지 악화 ⇒ 경제성장의 둔화 ⇒ 재정수지의 악화'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

< 국가부채 전망: OECD 국가(GDP 대비 비율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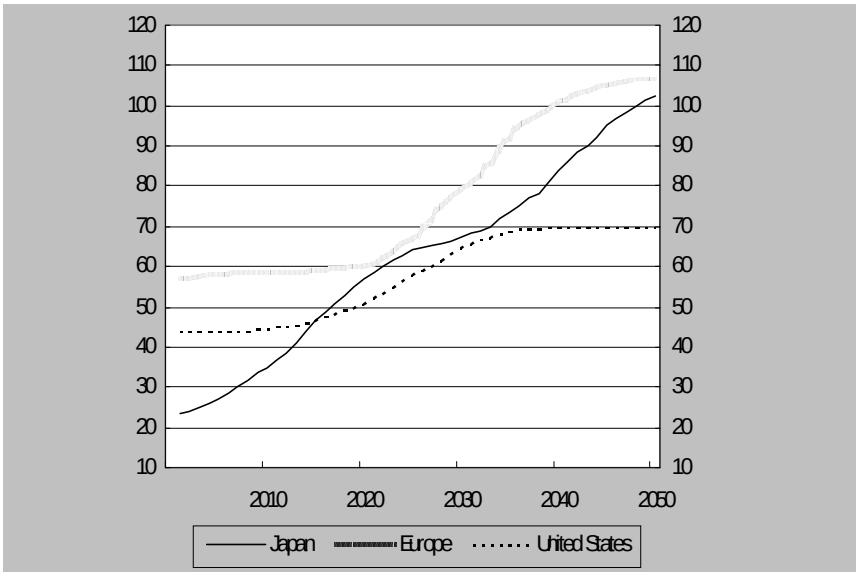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, 2000

### 5)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

□ 고령화의 진전은 고령자의 생활전반을 지탱하는 산업분야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○ 건강·의료복지서비스 부문의 확대 및 다양화

* 재택의료 및 원격의료시스템, 의료복지정보 서비스, 개호(수발)서비스, 장기요양서비스, 유전자정보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바이오 의약품, 유전자진단 및 치료법, 인공장기 및 조직의 개발 등

○ 노인인구의 다양한 생활 니즈에 대응하여 생활보전형 서비스분야 확대, 레저산업 및 주택산업의 다양화

* 자산운용대행서비스, 방범 등 안전관리, 가사대행서비스, 인생의 각 단계에 대응하여 개조가용이하고 수명이 긴 주택, 고령자에 적합한 Barrier-free 주택, 고령자용 여행서비스, 고령자용 다세대교류형 레저·리조트 등

○ 이와 같은 서비스부문을 뒷받침하는 제조업분야도 성장

## 4.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대책

◇ 고령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환, 고용구조의 개편, 자본시장의 안정화및 재정건전화 등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며, 이러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할수록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줄어듦

### 1)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

□ **목표:** 근로유인 제고 및 재정지출 억제

□ 연금제도의 개혁

○ 퇴직연장에 따른 연금자산의 하락이 큰 반면 소득대체율이 높다면 강한 조기퇴직의 유인을 제공

○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수급개시연령 연장 계획(2013년~2033년), 소득대체율 인하(70%→60%)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OECD 국가 중 조기퇴직의 유인이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함

- 좌측상단에 속한 나라들은 퇴직연장에 따라 연금자산은 증가하고 소득대체율은 낮으므로 근로 유인이 강한 반면 우측하단에 속한 나라들은 연금자산은 하락하고 소득대체율은 높으므로 조기퇴직의 유인이 강함

< 소득대체율과 연금자산의 변화: 61세 기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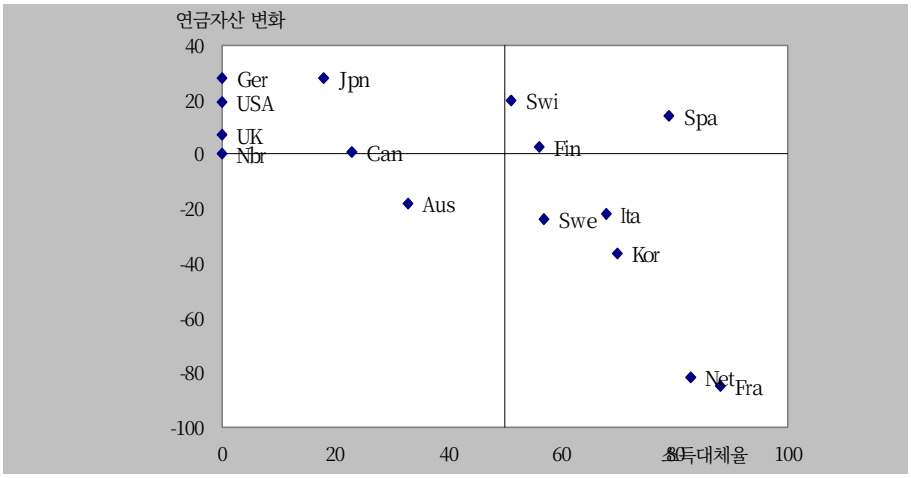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, 2001

○ 따라서, 수급개시연령의 연장, 소득대체율의 인하, 연금의 승급율 인상, 연금소득의 과세 등을 통해 조기퇴직의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

* **수급개시연령 연장:** 뉴질랜드의 경우 19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 61세 이상 노인인구 중 취업자수가 38.1%에서 58.5%로 증가하였고 공적연금의 총비용이 GDP 대비로 2.5% 감소

* **연금급여 및 보험료 조정:** 소득대체율을 25% 인하(그리스), 급여액을 보험료 납부액 현가에 연동(스웨덴), 62세 이후의 근로에 대해 프리미엄 지급(덴마크),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보험료인상(미국) 등

□ 의료제도의 개혁

○ **노인진료비 효율화:** 기존의 병원중심 진료보다 비용효과적인 재가진료서비스 및 시설의 확충, 일반진료와 장기요양서비스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

* 재가진료 및 말기진료의 확충: 그리스(1998), 헝가리(1997), 포르투갈, 스페인(2000) 등
* 진료와 수발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: 미국, 핀란드, 캐나다, 영국, 멕시코 등

○ 노인진료비 **분담:** 별도의 장기요양보험 도입, 개인부담 장려 등

* 미국: 가족 수발봉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, 양질의 민간 장기요양보험 가입 독려, 의료저축구좌방식 등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
* 체코: 가족에 의한 수발을 장려
* 일본: 2000년 별도의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일반적인 진료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분리하여 세대간 갈등을 완화

○ 건강보험의 위험분산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

* 기존 방식: 건강한 계층이 질병이 발생한 계층의 비용을 분담 →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재원분담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저하

* 대안 : 건강한 시기에 자신이 적립한 의료저축을 질병이 발생한 시기에 인출하여 진료비로 충당, 잔액의 증여 및 상속을 허용(의료저축구좌 방식) → 비용절감 의식을 제고하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고 자기부담원칙을 강화하여 세대간 갈등을 해소

### 2) 노동시장 대책

□ **목표:** 근로시기 연장 및 이에 상응하는 고용능력 및 고용기회 창출

□ 근로시기 연장

○ OECD 국가의 경우 연령 차별금지, 연령기준의 강제퇴직 금지, 평생교육 독려,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이 주된 대책임

* **연령차별 금지:** 신규채용, 배치, 승진, 교육, 퇴직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기업이

부담하는 고령자에 대한 교육비는 면세(네덜란드, 미국, 뉴질랜드 등)

* **고용형태의 신축성 제고:** 45세 이상인 근로자가 주종인 기업은 근로시간을 1/5까지 축소할 수 있고 고령근로자 고용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, 50세 이상의 근로자 해고에 대해서는 불이익 제공(오스트리아, 2000)

○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급위주의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년연장은 생산성과 임금간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년연장을 추진할 때는 임금구조 및 고용형태의 유연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

□ 고용능력 제고

○ 지식기반경제에서 노인인구의 고용을 제고하려면 급속하게 노후화되고 있는 지식 및 기술의 신속한 충전이 필요

* 1997년 및 1999년에 학교교육 개혁 및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개혁을 추진(이태리, 노르웨이, 네델란드 등)

□ 고용기회 창출

○ 고령노동의 수요가 진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령자의 근로유인제고는 노인실업만 야기할 수 있으며, 수요진작 대책으로는 보조금지급, 취업 알선, 고용 의무비율 부과(기준고용률) 등이 활용됨

* **보조금 지급:** 지급요건을 55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기업으로 대폭 완화(독일), 고령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(덴마크)

* **취업 알선:** **고령**의 해고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임금보조를 폐지하고 비영리부문에 고령 근로자를 알선(캐나다)

* **고용의무비율 부과:** 총고용인중 55세이상 근로자 비율이 3%를 초과하도록 법개정(한국)

* **근로시간 단축:**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(프랑스)

### 3) 자본시장 대책

□ **목표:** 연금기금 등 장기저축 자금의 건전성 및 운용수익율 제고를 통한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,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연착륙을 도모

○ 고령화로 인한 자본 수익률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서는 위험과 수익간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는 금융환경의 조성이 바람직

○ 그 외, 노후 대비용 개인저축 및 민간연금 상품들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자금들의 건전성 및 운영수익율 제고가 중요

□ 자본시장의 인프라 구축

○ 자본시장의 경쟁촉진 또는 자유화, 투자규제 완화 및 투자기회의 개방 등이 필요

* 독일: 상장요건 완화, 신규 뮤추얼 펀드 허용 및 기존 뮤츄얼펀드의 영업범위 확대,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, 주식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,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, 독일 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(1998)
* 오스트리아: 비엔나 주식거래소 민영화(1998), 인수합병 규제의 선진화, 주식거래 감독에 선진 기법 도입
* 덴마크: 주식투자에 대한 상한을 40%에서 50%로 확대

○ 금융감독 및 건전성 규제의 강화 및 투명성 제고 필요

* 연금기금의 투자에 대한 원칙 확립(벨기에), 기업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감독 강화 조치 도입(체코), 국내채권시장과 유로채권시장의 구분폐지, 채권시장 구조의 단순화, 적격투자자의 개념 도입, 물가연동 채권 발행(프랑스), 감독 및 규제의 틀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(노르웨이), 보험위원회(Insurance Chamber)의 감독기능 강화(네델란드), 연금기금 펀드 매니저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자체투자 제한 강화(벨기에) 등

○ 향후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민간연금 등 개인 장기저축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

* 민간연금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(헝가리), 시장가격 평가제 도입 등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 강화(일본), 민간강제연금에 대한 규제 강화(폴란드, 멕시코, 헝가리), 연금기금에 대한 독립감독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기준 설정(이태리) 등

□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 및 해외투자 검토가 필요

○ 국민연금기금 운용액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와 같이 채권위주의 투자전략을 고수한다면 채권시장의 왜곡이 우려되므로 주식투자 비중의 확대가 필요

○ 국민연금기금의 급속한 증가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연금의 수익성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일정부분을 해외자본시장(예: 미국의 중장기 국채)에 투자하는 방안 검토 필요

* OECD 국가 대부분이 해외투자의 허용 및 확대에 대해 이미 조치를 취하였거나 검토 중

### 4) 재정개혁

□ **목표:** 재정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수지의 건전화와 국민부담의 경감

□ 재정규율의 강화, 예산편성 절차의 개선,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

○ 중기재정관리제도의 지속적 추진

- 예산연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수입 및 지출 전망을 실시하고 중기적 예산제약 등을 고려하여 3년간의 대략적인 총지출규모를 미리 설정, 매년도 예산은 이러한 중기적 지출상한선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편성

* 스웨덴: 명목기준으로 3년간 재정지출의 상한을 설정
* 프랑스: 재정지출 증가율을 3년간 총 4%로 제한
* 벨기에: GDP 대비 6%의 재정흑자, 국가부채의 대폭적인 축소(1997년 122% → 2010년 73% → 2030년 34%)를 포함하는 '벨기에 안정화 계획: 2000년~2002년' 수립.
* 뉴질랜드: 향후 최소 10년간의 재정전망을 담은 재정경과보고서 작성을 법제화
* 덴마크: 1999년 현 제도가 영속할 경우의 미래 재정수지 경로를 보여주는 '조정재정수지' 개념을 도입
* 아일랜드: GDP의 1%를 고령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적립

### 5) 여성정책

□ **목표:**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제약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제고

□ 여성 노동공급·수요측면의 제약요인 완화

○ 여성노동의 공급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은 육아부담(31%), 사회적 차별 및 편견(28%), 불평등한 근로여건(13%), 가사부담(11%) 등의 순서임(우먼코리아 보고서 2000)

○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또는 사회부담비율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의 여성고용비용을 경감하지 않으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여성고용을 기피할 유인이 강함.

□ 동시에 단순히 남성노동을 여성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고용기회의 창출이 병행되어야 함

### 6) 이민정책

□ OECD 국가의 경우 이민확대를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생산연령인구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음

○ 이민정책은 이민인구 특성상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고 이민가구의 출산율이 본국의 평균 출산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

* 미국: 이민가구의 평균 출산율은 미국전체 평균 출산율의 두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선진국 중 유일하게 대체출산율을 유지하는 비결로 분석되고 있음
* 일본: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을 이례적으로 폐쇄적인 이민정책에서 찾는 분석들이 많음
* 유럽: 서유럽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제기

○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처우 문제, 중국 등과의 외교적인 문제,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, 한국 실업자들의 눈높이 문제 등이 이민대책에 앞서 논의될 필요